

소방기술자([]기술자 []감리원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참여사업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소재지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주요 용도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분야	구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여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참여사업(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및 제출 서류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공사 감리원	감리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 관리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감독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계 또는 감리	신고 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제출 서류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소속회사 중 업종은 소속회사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2. 소속회사 중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참여사업 중 참여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4. 참여사업 중 대상물규모는 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참여사업 중 주요용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참여사업 중 직위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직위(책임기술자, 책임감리원, 보조기술자 등)를 기재합니다.
7. 참여사업 중 담당업무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공사감독)를 기재합니다.
8. 참여사업 중 업무분야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9. 참여사업 중 구분은 감리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감리의 종류(상주, 일반)를 작성합니다.
10. 참여사업이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뒷장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첨부되는 장마다 소속회사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간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기록된 이동형 데이터 기억장치를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 협회장 귀하”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 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